

거래 무실적 중도매업 행정처분(중도매업 허가 취소) 공시송달 공고

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3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(중도매업 허가 취소)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년 3월 26일

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



행정처분명령서

성명	한*태	허가번호	2023-K-002
주소	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429번길 20, ***동 ***호(다대동, 삼환아파트)		
상호	현*수산	생년월일	19**.02.03.
처분이유	○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3항제6호 위반 - 3개월(2025년 9월, 10월, 11월)간 도매시장 내 중도매업 거래실적이 없어 도매시장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였음		
근거법령	○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3항제6호 ○ 같은 법 제82조제5항제1호 ○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		
행정처분내용	중도매업 허가 취소		
의견청취결과	청문 불출석 및 의견제출 없음		
○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			
청구절차	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부산광역시시장에게 하여야 하며,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(행정)법원에 하여야 합니다.		
청구기간	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(행정소송:1년)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.		
2026. 3. 17.			
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			

